

울 산 지 방 법 원

제 3 민 사 부

판 결

사	건	2012가합4615	경업금지 등
원	고	A	
		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환	
피	고	B	
변	론	종 결 2013. 6. 5.	
판	결	선 고 2013. 6. 19.	

주 문

1. 피고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에서 2021. 11. 10.까지 원고가 울산 중구에서 운영하는 C방앗간과 동일한 떡 제조업을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. 3. 6.부터 2013. 6. 19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 중 1/3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5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원고는 2011. 11. 중순경 피고로부터 울산 중구에서 피고가 운영하던 'C방앗간'이라는 상호의 떡집(이하 '이 사건 떡집'이라 한다)의 쌀가루 만드는 기계, 고추 빵는 기계 등 시설을 권리금 1,500만 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.

나.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 1,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. 12. 12.부터 이 사건 떡집을 운영하고 있다.

다. 피고는 2012. 3. 6.부터 이 사건 떡집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울산 중구(이하 '이 사건 점포'라 한다)에서 'D방앗간'이라는 상호로 떡집을 운영하고 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~9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포함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상법 제41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

1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이 사건 떡집 양도계약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떡집 영업 자체를 양도하였으므로, 피고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떡집 부근인 이 사건 점포에서 'D방앗간'이라는 상호로 떡집을 운영함으로써 경업금지의무

를 위반하였다.

2) 이에 대하여 피고는, 2012. 5. 15. 이 사건 점포를 E에게 양도하고, 2012. 5. 31. 이 사건 점포를 폐업하였으므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.

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피고가 2012. 5. 15. 이 사건 점포를 E에게 양도하고, 2012. 5. 31.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폐업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나, 갑 제3, 6, 7~9호증, 을 제2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포함)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이 사건 점포에서 피고와 피고의 처가 함께 떡을 제조·판매하고 있는 사실, 피고는 울산 중구 F협회에 이 사건 점포의 사장 자격으로 참석하고 회비도 납부한 사실, E은 1982년생에 불과한 사실한 사실이 인정되고,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,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거나, 제3자인 E을 내세워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)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, 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영업양도인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에서 2021. 11. 10.까지 떡 제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
나. 손해의 발생 및 범위

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.

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, 원고가 피고에게 쌀가루 만드는 기계, 고추 빵는 기계 등 시설에 관한 비용을 포함하여 권리금 1,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,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이 권리금 상당에 이른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

서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다만, 법원은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측과 가해자측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, 특히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 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(대법원 2007. 6. 1. 선고 2005다5812,5829,5836 판결 등 참조), 이 사건에서 피고의 의무 위반이 매출액 감소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점, 그 밖에 이 사건 계약의 경위 및 그 약정 내용, 피고의 의무 위반의 경위 및 태양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, 피고의 위와 같은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위자료의 액수를 10,000,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기 시작한 2012. 3. 6.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. 6. 19.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도진기

 판사 홍지현

 판사 이수주